

【 27 】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8. 19.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인 준농림지역내 농촌지역 정서를 해치는 식품접객업(음식점), 숙박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무분별한 개발의 사전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행위제한대상은 식품접객업(음식점), 숙박업, 관광숙박업 (안 제3조)

나. 구체적인 제한지역 및 대상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안 제4조)

양주군조례 호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지않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 이라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 이라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 이라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제한대상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이하 “숙박업등”이라한다)으로한다

제4조(제한지역의 결정) ①숙박업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 보호구역
2.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철로변 지역

3. 임상이 양호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4.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5.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주변으로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
6. 하천변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7.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
8. 미풍양속 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9.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제한지역 및 대상은 제5조에서 정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한지역 및 대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제4조의 제한지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대표 3인 이내
2. 환경,도시분야 전문가 3인 이내
3. 관계공무원 3인 이내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공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군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군청 및 읍면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준농림지역 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토지거래허가,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림훼손허가등 타법령에 의거 동 조례에서 제한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 기 도

우 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1 / ☎ (0331)42-4881(교)3442, 6442 / 담당 차선호

문서번호 지역 58214 - 3840

시행일자 1995. 11. 25 . (10)

발 음 받는곳참조

참 조 도시과장

선결	부수	부수	지	
접	일자	1995. 11. 27	결	부수
수	번호	18571 (2440)	재	과장
처리과	도시과		공	계장
담당자			람	계원

제 목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에 따른 조례제정 관련지침 및 준칙안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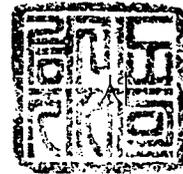
1. 지역 58214-3230('95. 9. 15)호와 관련입니다.

2. 준농림지역내 농어촌지역 여건과 부합되지않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숙박시설 및 고급음식점의 난립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시 이의 제한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3. 귀 시·군 조례로 제한지역 및 시설을 정하되 시·군간 제한기준의 형평성과 일관성 확보차원에서 덧붙임과같이 도 지침 및 조례준칙안을 수립 시달하니, 해당 시군에서는 동 지침등에 의거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효율적인 용도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조례 제정시 지역 58214~3826('95. 11. 23)호에 의거 통보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준농림지역내 행위허가 관련지침 1부. 끝.

경 기 도 지



받는곳 : 러(01, 07~10, 13, 14, 19~31)

지역계획

準農林地域内 行爲制限 關聯 指針

— 食品接客業 及 宿泊業 —

京 畿 道

準農林地域內 食品接客業 및 宿泊業 行爲制限 關聯指針

〈 目的 〉

- 준농림지역내 농어촌지역 여건과 부합되지 않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숙박시설 및 고급음식점등의 난립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시 이의 제한근거가 마련됨에따라
- 시·군 조례로 제한지역 및 시설을 정하되 제한기준의 형평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I. 制限指針

절 차 적 측 면

□ 조례제정 : 제한기준과 구체적 제한지역 지정절차 명시

○ 제한지역 및 시설기준 명시

해당 시·군에서는 도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제한 대상과 제한기준을 시·군조례로 제정

지역특수여건상 도 지침내용과 상이하게 조례에 제한 대상이나 제한지역을 정할시 도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위원회 심의·결정

해당 시·군에서는 구체적 제한지역 및 대상(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대표, 환경 및 도시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

0 결정 공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읍·면·동
장에게 송부하여 20일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공고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o 제한지역 위치 및 범위
- o 제한목적
- o 제한행위내용
- o 기타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

내용 적 측 면

제한대상

○ 제한지역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 있는 시군의 시장·군수가 도
지침에 따라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지정

○ 제한시설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중 시장·군수가 도 지침에 따라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결정

□ 제한내용 (기준)

○ 제한방법

- 시설별 건축물 면적에 상관없이 제한
※ 식품접객업은 시·군 실정에 따라 면적 조정가능

○ 제한지역

-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I, II 권역
- 상수원 보호구역
- 고속도, 국도, 지방도, 시·군도 및 철로변지역
-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주변으로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
- 하천변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
- 미풍양속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 기타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경과 조치

조례 제정이전 신청된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되 본 지침과 기시달된 내무부 및 건설교통부 지시에 의거 적극 억제

Ⅱ. 條例準則(案)

○ ○ 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지않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 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제한대상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과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이하 "숙박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음식점은 시·군 실정에 따라 면적에 의한 제한 가능

제4조(제한지역 결정) ①숙박업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I, II 권역
2. 상수원 보호구역
3. 고속도, 국도, 지방도, 시·군도 및 철로변지역
4.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5.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6.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주변으로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

- 7. 하천변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 8.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
- 9. 미풍양속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지역
- 10. 기타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제한지역 및 대상은 제5조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한지역 및 대상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제4조의 제한지역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지역주민대표 3인 이내
- 2. 환경, 도시분야 전문가 3인 이내
- 3. 관계공무원 3인이내
- 4.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때에는 부결된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정한다.

제6조(공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시·군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시·군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行政事項

조례 제정계획 제출

준농림지역이 있는 시군에서는 본 지침중 제한지역(기준)에 해당
될시 조례 제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계획을 '95.11. 30일 까지
제출

결과보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시군에서는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한후 결과 제출

조례 제정후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제한지역과 제한대상이
결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그 내용을 도에
결과 제출

인 경우에는 草地法을 각각 적용하는 등 各個別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準農林地域

環境汚染의 우려가 있거나 敷地가 一定規模 이상인 工場·建築物·工作物 기타의 施設의 設置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利用行爲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農林水産部長官이 農業振興이나 農地保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에서는 農地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와 衡平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대기유해물질 16개

- | | |
|-----------------|---------------|
| ○ 카드늄 및 그 화합물 | ○ 염소 및 염화수소 |
| ○ 시안화수소 | ○ 불소화물 |
| ○ 납 및 그 화합물 | ○ 석면 |
| ○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비페닐 | ○ 니켈 및 그 화합물 |
| ○ 크롬화합물 | ○ 염화비닐 |
| ○ 비소 및 그 화합물 | ○ 디옥신 |
| ○ 수은 및 그 화합물 | ○ 페놀 및 그 화합물 |
| ○ 구리 및 그 화합물 | ○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제14조(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법제15

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95.10.19)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중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4종사업장 및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과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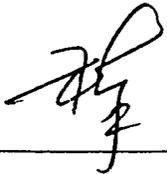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중별사업장 규모
(연간 고체환산연료량)

- | | |
|----|---------------------|
| 1종 | 10,000톤이상 |
| 2종 | 2,000톤이상 10,000톤 미만 |
| 3종 | 1,000톤이상 2,000톤 미만 |
| 4종 | 200톤이상 1,000톤 미만 |
| 5종 | 상기1종내지4종의 사업장 |

	<p>다. 중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 1995년 6월 30일 이전 오염물질 배출량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p> <p>라. 중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p> <p>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u>공중위생법</u>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신설 95.10.19></p> <p>②제1항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라도 기존 도로구역이나 철도구역안에서의 도로화장의 경우등 준농림지역의 지정목적에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93.12.28]</p>	<p>제5조(경미한 행위)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3.12.31, 94.8.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 2. 기존 도로구역안 또는 철도구
--	---	--

선 람 민 원 처 리 부

선	군	수
람		

접수번호	158	접수년월일	94. 7. 29
제 목	산림훼손 (숙학업소 신생 반대) 에 대한 건청		
민 원	주 소	백석 향중거리 547	
신 청 인	성 명	한성규외 131인	
처리부서	산림 실. 42 소		
처리기간	1994년 8 월 5 일 (7 일간)		
	산림리어구 구관 구역관리회의 변천은 성숙 모라할것 등 위/		

숙박업소 신설 반대

민원서류 진 정 서

처리기한 1974. 8. 5.

홍죽2리 주민일동은 마을입구 주변인 홍죽리산7번지에 건립예정인
숙박업소 건립을 전주민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존경하는 양주군수님께서서는 주민들의 민의를 참고하시어 동장소에
숙박업소가 절대로 건립되지 않도록 숙박업소허가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업소란 옛날에는 글자 그대로 인구가 밀집된 도시 상업지역에
오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를 위해서 숙박을 해야되는 곳으로
사용되었지만 현시대의 숙박업소란 향락유희업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백석면 홍죽리산7번지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나 상업지역도 아닌 전원적인 농촌지역으로 숙박업소가 건립

되는것이니 절대로 건립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주민의 민의입니다

고. 우리마을은 전원적인 농촌부락으로 마을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숙박업소 건립예정지는 주변이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농사를 짓기위해
왕래를 해야하는 입구에 숙박(향락)업소가 건립된다는것은 주민의
영농의욕을 상실시킬것이다

선 결	과 장			결 재 (공 기)	
접수일시	1974. 7. 29	시	번호	158	계장

2. 현숙박업소 건립예정지는 마을입구부근으로서 전주민이 이곳을 통해서
출타를 해야하며 더구나 학생청소년들의 등 학교길이나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항시 숙박(향락)업소의 실태를 목격하면서
살아야한다면 이러한환경속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발달은
어느곳으로 가겠습니까?

자라나는 후세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더욱더 용납되지않는 시설입니다

3.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전량이 농지로 유입되게 되어있으며
저지역에서는 틱수로 물을 다시이용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게
설계가 되어있으므로 절대로 오폐수를 방출할수가 없습니다
위와같은 사유로 홍죽리 산7번지에 신청되어있는 숙박업소허가를
최소하여 주시옵기 바라며 추후에도 이지역 부근에 숙박업소가
허가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 9 4 7 1 1

숙박업소건립반대추진위원

한	성	권	유	용	석	이	흥	신
백	대	병	장	성	학	안	중	현
조	영	직	박	래	준	백	주	권

의정부중 앙주군청내)
손경하는 양주군수님께

민원서
처리기한 1994. 7. 29

계속되는 폭염속에 군정 업무를 수행하시는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나는 양주군 수내면 광사리 318 번지에서 거주하는 평범한 아낙입니다.
 남편의 민원을 부리시고 군수님께 이 글을 올립니다.
 넓은 아량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아뢰을 말씀은 우리집과 경계인 광나리 단 96-2 번지에
 숙박시설 부지로 산림훼손 허가를 군수님께서 허가하여 주민들을 인접된
 지역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별안간 중장비로 넘어 올리고 집앞 경계까지
 매우 파헤쳐서 허가권자인 권용찬에게 문외한 결과 숙박시설(일명 러브호텔)
 부지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산림훼손 허가 조건에 인접된 50m 이내에
 묘지 주인에게는 동의를 받아야 되나 인접된 주택에는 동의는 물론 알지도 못하는데
 허가하여주는 법의 맹점을 가지고 시행하는 공직자를 원망합니다. 본 산림훼손
 허가 준공된후 건축허가를 하여 주었다면 3층 집인 러브호텔이 우리집 보다
 더 높은 건물이 지어지면 우리집 나뭇가지가 모두 노를되고 앞으로 시행하게 되는
 자남들의 별장은 물론 머리 손사 손녀의 교육에 지장을 주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본건으로 인하여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가족간의 지은
 단점으로 심장병이 발생하여 병원에 다니며 악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주민들도 본 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풍양속을 헤치고 퇴폐문화를 조장하는 퇴폐시설이 도란변에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것이 안타깝습니다. 바라옵건데 제가 들리는 정부에서도
 퇴폐시설의 신중을 억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모르지만
 관광생활나들이나 숙박시설은 절대 불가하오니 선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에 바쁘신데 심려를 가지드려 죄송합니다. 농촌 아낙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만 끝이겠습니다.

부과수	양주군	광사리 318	가 25	이정주 올림
1994 7 22	민원번호	153	개장	
처리과	산림과	(공람)	개원	

1. 民 願 事 務 處 理 簿

受 入 順 號	接 受		接受受 入處理 擔當者	種 類	件 名	民 願 人		處 理 期 間	經 由 主 移 讓	協助主는照會		調 查 年 月 日	處 分			備 考
	保 長	番 號				月 日	住 所			姓 名	月 日		內 容	年 月 日	月 日	
1994	113			(사외선) 이의	1922 도로개발사업 등 보상에 대한 이의	회현 덕점 91-8	함재석외17	1.20		1.18	협의		2.1	회신		신림민원
1994	124			(건설) 타면	폐해지교량양여요청	광천 하우 607	이병대외18	1.21					1.31	처리		신림민원
						계좌과장										
1994	215			(사외선) 재정정	토지 수용가(이외서회신)에 대한 재정정	회현 덕점 91-8	함재석외19	2.22					2.2	회신		신림민원
						계좌과장										
1994	402			(주택) 정선	수확면 다너기내 개량정선	장흥 부림리 121	이영수외1779	4.9					4.9	처리		신림민원
1994	411			(건설) 정선	하천공사 조정선 정선	응현 하패 10-1	홍순오외4명	4.18					4.18	"		신림민원
1994	413			(주택) 타면	간자 주택분양면적에 따른 타면	광천 광성 244-1	이윤석외1명(홍순오)외4명	4.20					4.20	처리		신림민원
1994	419			(건설) 정선	도로변 휴게소에 대한 정선	장흥 일명 240-4	김윤덕외2명	4.26					4.26	"		신림민원
1994	420			(토지) 정선	상수도 분조 수용에 대한 정선	회현 덕점 603	지종남외1명	4.27					4.27	처리		신림민원
1994	422			(토지) 정선	주내 교유리 지역 도체정선	주내 교유 98	이영수외5명	4.28					4.28	처리		신림민원
1994	425			(주택) 정선	주택시설 정선에 대한 정선	경흥 일명(구마)	주민일등	5.2					5.2	"		신림민원
1994	430			(주택) 재정정	간자 주택 분방분방정선	광천 광성 244-1	이윤석외1명	4.9								신림민원

양 주 군 민 원 실

계좌과장

380mm x 268mm

①접 수		②접 수 또는처리 담당자	③ 종류	④건 명	⑤인 원 인		⑥ 처리 기간	⑦ 경도이 유년첨	⑧협조또는조희 조 사		⑩처 분				
번호	월일				성 명	주 소			월 일	회신월일	연월일	월 일	내 용	확 인	
1994	7.20		거성 (거의)	세계에대한사 세계는 온통이슬람교	김동훈외 1인	하리현 덕정차66	7.27		7.22	1차회의		8.19	처리		
1994	7.23	박기현	환남 (거의)	대한 거점 환경복지사업추진사업	김영동외 1인	" 신55-3	7.30					7.28	처리		
1994	7.29		서림 (거의)	세계에 대한 거점 환경복지사업추진사업	김영동외 1인	(백석) 홍승근외 1인	8.5				0	8.4	회신		
2 계 관 과 장															
194	8.02	홍승근	건설 (거의)	에대한 거점 승교 횡단 보도에 대한 거점	홍승동 외 1인	연천 라재 1리 동양사	8.9		8.9	공안회의		9.6	처리		
1994	8.29	서림	지경 (거의)	고단 조경 반대에 대한 거점	송영원외 1인	하리현 덕정차 114	8.19					8.19	처리		
1994	8.6	서림	지경 (거의)	성명 및 관계자 연락처 2차 (문도지역) 거점	이재민외 1인	당봉 성문 400-2	9.13						9.2	처리	
1994	8.6	서림	환남 (거의)	공정거래 부당행위 거점	조한우	남. 경신 227	9.6					9.6	처리		
2 계 관 과 장															
1994	9.12	서림	지경 (거의)	세계에 대한 거점	서림외 1인	당봉 성문 400-2	9.23			0		9.22	처리		
1994	9.26	서림	지경 (거의)	서동 비스용회합리화 거점	이재민 외 1인	백석 10안 33	10.4					10.4	회신		
1994	9.29	서림	환남 (거의)	대한 거점 공정거래명령의 거점	이재민외 1인	광천 현호 111-4	10.7					10.6	처리		
2 계 관 과 장															

-524-

1. 民 願 事 務 處 理 簿

裁 接 受	受 受 受		種 類	件 名	民 願 人		處 理 期 間	程 由 王 移 棟	協 助 王 照 會		調 查 年 月 日	處 分			備 註	
	保 長	番 號			月 日	住 所			姓 名	月 日		內 容	年 月 日	月 日		內 容
1994	88	3.23	(주택) 재개발	(도곡동) 재해취약건물문예대학지진정	도봉구 방학동 691-2	박정환	3.20					3.30	처리		주택 상의 1168 1168-10 -899	
1994	69	3.24	(건설) 협의	도로 사용에 대한 협의	과천시 병양동 230	김정순	3.21					3/29	처리		1168-10 -899	
1994	70	3.25	(강사) 재직지	주요회사 강의 대학 재직지	대명빌라 관악동 410-9	정준환	4.1					3.24	처리			
1994	71	3.26	(주택) 점검	건축행위 중지	대명빌라 관악동 410-9	이수영외인	"					3.31	처리			
1994	72	3.28	(건설) 협의	청양천 개수공사	대명빌라 관악동 410-9	최우숙	4.2					3/31	처리			
1994	73	3.28	(건설) 협의	도로 확장공사	시흥구 시흥동 1718-4	황수연	4.4					4/1	처리 (이정)			
1994	74	3.29	(건설) 협의	주차시설	방배동 453-15	남주현	"					4.14	처리			
1994	75	3.30	(건설) 협의	탕당천 개수공사	남양주상계동 629-100	이상규	"					4/4	처리		1360 -900	
1994	76	3.30	(건설) 협의	도로공사	하차민수에 대한 협의	회천동 정리 12567	윤향성	4.7					4/7	처리		1310 1310-559
1994	77	3.31	(건설) 협의	소음 공해로 인한	재개발 회천동 정리 346-9	정철	4.8					4/8	처리		1320 1320-559	
1994	78	3.31	(건설) 협의	개인소유양	재개발 회천동 정리 346-9	김종태	"		4.8	처리		4.8	처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계 작 과 장 양 주 군 민 원 실 </div>																
1994	79	4.02	(주택) 점검	주택업	인근에 대한 협의	강릉 북동 131	이영수외인	4.9				4.9	처리			
1994	80	4.06	(도시) 협의	토지	경정변경	취소요청	백석 방정 116-2	정지안	4.13			4.12	처리			
1994	81	4.08	(행정) 협의	주거	공공	배후에 대한 협의	영등포동 458 이상	경정남	4.11			4.13	"			

양 주 군 민 원 실

380 mm x 266

- 525 -

1. 民 願 事 務 處 理 簿

接 受 長	接 受		接受主 之處理 担当者	種 類	件 名	民 願 人		處 理 期 間	理 由 主 之 移 讓	協 助 主 之 照 會		調 查 年 月 日	處 分			備 考
	番 號	月 日				住 所	姓 名			月 日	內 容		月 日	內 容	確 認	
82	1994 4 1 1			(건설) 진정	하천공사 조정권 진정	은혜 리대 10-1	홍순외 4인	4.19					4.16	회신		
83	1994 4 1 3			(주택) 타원	관자구엔 분양대상지(타원)에 대한 (건설) (주)이양 관저 앞변 24-1	(주)이양 어윤석외 2인	4.20						4.20	처리	주 88507-149	
84	1994 4 1 4			(재무) 진정	토지대장 정정에 대한 진정	은평 구한 197-145	최영환	4.21					4.21	지정		
85	1994 4 1 5			(상업) 진정	상업 상지 훼손 및 분묘에 대한 진정	성동·우동 24-11	최윤경	4.22					4.21	회신		
86				(주택) 진정	공갈분 부분 만조정원	화현 리 669 대원연립	김현교	"					4.21	처리		
87	1994 4 1 8			(상업) 청문	농림지역내 농지정원 허가정원	백서 외산 24-7	김명환	"					4.21	회신		
88	1994 4 1 9			(주택) 내외장 협의	반기 상가임 전세 계약	강남 화정 24-1	손성찬	4.21					4.21	회신		
89	1994 4 1 9			(상업) 협의	농지 정원에 대한 협의	과천·별양·정원 509	김정순	4.21					4.21	회신		
90	1994 4 2 0			(건설) 진정	도로변 주차장에 대한 진정	강릉 일영 280-4	김원택외 2인	"					4.26	처리		
91	1994 4 2 0			(건설) 도시	상수도 분조수용구에 대한 진정	취원 덕계 603	지종권외 2인	4.27					4.26	처리		
92	1994 4 2 1			(건설) 도시 (합원)	주내 고층리 지역 대개념 변경	주내 고층 98	이영수외 5인	4.29					4.29	처리		
93	1994 4 2 5			(건설) 주대	숙박시설 건설에 대한 진정	강릉 일영구마리	주만일등	5.2					5.2	회신		
94	1994 4 2 8			(건설) 합원	과천 차양 김용소 분양에 대한 진정	은평 도하 72	김형남	5.6					5.2	이송		
95	1994 4 3 0			(주택) 재정	관자구엔 분양대상지(타원)에 대한 (재정) (주)이양 관저 앞변 24-1	어윤석외 2인	5.9						5.7	처리	주 88507-150	
96	1994 4 3 0			(주택) 협의	관자구엔 분양대상지(타원)에 대한 (주택) (주)이양 관저 앞변 24-1	어윤석외 2인	5.9						5.6	처리		

계좌과장
양주군노원실

- 526 -

민원사수처리부

접수 처리 당자	③ 종류	④ 명	⑤ 원 인		⑥ 처리 기간	⑦ 경유 또는 이첩	⑧ 협조또는조회		⑨ 조사 연월일	⑩ 처 분			비고
			성명	주소			월일	회신월일		월일	내용	확인	
이와	재무 (재외)	(도령유) 모텔 건축 허가에 대한 행정	박종익외 6명	장흥 일영리 4번	5.10					5.22	처리		선릉
노와	재무 (재외)	주식회사 공리에 대한	김익수	광천 덕포리 449	5.20					5.20	처리		선릉
노와	재무 (재외)	사유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여승윤	주내 삼송 29	5.21					5.21	처리		선릉
노와	재무 (재외)	대항청 신청서 상 기재된 바에	정기선, 정민호, 하연희외 4명	현정 덕계리 446-1	"					5.21	처리		선릉
노와	재무 (재외)	사유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여승윤	주내 삼송 29-3	5.22					5.22	처리		선릉
노와	재무 (재외)	도로점유에 대한	최병권	" 남방 2리 504차	"					5.22	처리하	5.21 처리하	선릉
노와	재무 (재외)	가계 세관청 신청서 기재된 바에	이여귀외 1명	광천 삼동 144	"		5.17	5.24		5.17	처리하	5.27 처리하	선릉
노와	재무 (재외)	대항청 신청서 기재된 바에	박종익외 6명	광천 가남 107	5.24					6.11	처리하	6.27 처리하	선릉
노와	재무 (재외)	중등교육청에 대한	김형수	주내 무양 286	5.27					5.26	처리		선릉
노와	재무 (재외)	소유권 확인에 대한	양동민	중구 정동 22	5.28								선릉
노와	재무 (재외)	이의 개별공시제에 대한	고종명	백석 남지 199-1	5.30					5.28	처리		선릉
노와	재무 (재외)	행정처리에 대한	정준환	현정 덕계리 446-1	"					5.30	처리		선릉
노와	재무 (재외)	대항청 신청서 기재된 바에	권항순	양평 서동면 문촌리 1048	5.31					5.31	처리		선릉
노와	재무 (재외)	취업보상에 대한	박수태	현정 덕계 680-3	6.1					6.26	처리하	처리하	선릉
노와	재무 (재외)	전역지 보상요청	조명환	광천 가남 101-3	"					5.30	처리		선릉
노와	재무 (재외)	중등교육청에 대한	김규환	쌍문중 새마을 1	6.2					6.2	처리하	6.27 처리하	선릉
노와	재무 (재외)	취업보상에 대한	김광수	현정 덕계 680-3	"					6.3	처리하		선릉

배경

민 권 사 기 시 너 너

수	②접 수 또는처리 월 일	③ 또는처리 담당자	④건 명 종 류	⑤민 원 인		⑥ 차 리 기 간	⑦ 경 도 유 선 척	⑧협조또는조회		⑨ 조 사 연월일	⑩처 분			비
				성 명	주 소			월 일	회신월일		월 일	내 용	확 인	
6.17	카자수	재무 (건의)	응도폐지불라건의	김명동	광천 가남 738	6.23				6/23	처리			
6.17		도시 (건의)	대안정경 (정경도시계획재정지정건에)	이형호외5인	회현 덕계 398	6.24				6/23	처리			
6.20		도시 (건의)	대안정경 (건의)대개발재정지정건에	최현외2인	회현 덕계리 411	6.24				6/23	처리			
6.20		도시 (건의)	대안정경 (건의)대개발재정지정건에	성기만외5인	장흥삼하 307	6.27				6/27	처리			
6.22		도시 (건의)	대안정경 (건의)대개발재정지정건에	한일형외9인	광천 가남 22114	6.29				6.29	"			
6.24		도시 (건의)	대안정경 (건의)대개발재정지정건에	유재용외2인	" 광천 산2	7.1				7.9	"			
6.27	장흥군	도시 (건의)	대안정경 (건의)대개발재정지정건에	유현식	영동파 대영동 67	7.4				6/30	처리			
6.29		도시 (건의)	대안정경 (건의)대개발재정지정건에	이용성외2인	우형 용암리 507	"				7/2	"			
6.30		도시 (건의)	대안정경 (건의)대개발재정지정건에	유장영	광천 가남 737-4	7.6				7/5	처리			
7		도시 (건의)	대안정경 (건의)대개발재정지정건에	이원자와외인	문려 도하 2	7.7				7.2	도지단			
7		도시 (건의)	대안정경 (건의)대개발재정지정건에	한상진	광천 덕점 491-1	"				7.9	처리			
7.04	39	재무 (건의)	대안정경 (건의)대개발재정지정건에	송미숙	서양현·서정 1149-2	7.8				7.4	처리			
7.04	40	재무 (건의)	대안정경 (건의)대개발재정지정건에	오명선	문려 봉암 244	7.9				7.5	회신			
7.04	41	도시 (건의)	대안정경 (건의)대개발재정지정건에	양진석외14인	주내 어둔 246	7.11				7.9	처리			



민원사무처리부

수	②접수 또는처리 담당자	③ 종류	④건명	⑤민원인		⑥처리기간	⑦경유는첨	⑧협조또는조회		⑨조사연월일	⑩처리			비
				성명	주소			월일	회신월일		월일	내용	확인	
1.08	유한	개발(의)	에대항이의	김성수	이천·북방·신원 27	7.15					7.22	처리		
		대(의)	기후도로 사용에대항의	배정숙	아산·용암 202	"					7.13	처리		
	안영	건설(의)	복개공사에대항의	한기연	광적 광복 12	"					7.11	"		
11		재무(의)	지적도면 상에 대항의	오한동	남양주 상동면의방 188	7.18					7.16	처리		
1.2		지경(의)	지동차 양소에 대항의	김동원	사·풍상구 함남 13-15	7.19					7.14	처리		
	홍	도시(의)	도시가역 재조정에대항의	이병관	하현 덕계 462-3	"					7.18	경상도보 9.26	처리	
15	수동	상림(의)	임야 훼손에 대항의	하종식	서호·방배가성 신방배 22	7.22					7.22	회신		
18		재무(의)	공유지 불라건의	지남남	남·서산 226-2	7.24					7.25	"		
7.19	안대영	건설(의)	공항 폐쇄에 대항의	서진성	동대동·강안 20-4	7.26					7.26	"		
20		건설(의)	지적에대항의	김동원(의)	리전 덕정 26-6	7.27		2.22	차경의		8.19	처리		
		건설(의)	" 건의	동정터	" 127	"		2.22	차경의		8.19	처리		
22	수동	상림(의)	산림훼손에대항의	이정주	주내 관사리 218	7.29					7.29	처리		
23	수동	건설(의)	해변훼손에대항의	김병의(의)	리전 덕정 산55-3	7.30					7.29	처리		
25		상림(의)	산지전용 해에대항의	이종립	회성·장탄·해항산 1	8.1					8.1	처리		
27		재무(의)	재산상세에대항의	김학삼	이천·중구 상동가 2-8	8.3					8.3	처리		
	유한	지경(의)	주요 도로변에대항의	민승우	장흥운다 365-1	"					10.6	처리		
29		상림(의)	산림훼손에대항의	하정구(의)	배서·결곡리 541	8.5					8.5	처리		

수 월일	②접수 또는처리 담당자	③ 종류	④건명	⑤인원		⑥ 처리 기간	⑦ 경우 유관 기관	⑧협조또는조회		⑨ 조사 연월일	⑩처 분		
				성명	주소			월일	회신월일		월일	내용	비고
9		도시 (건의)	건축가능여부질의	정승락	중도 광흥동 12-4	8.5					8.2	처리	
			기차기차 전차 전차										
06 8.11	양경원 김세희	건설 (건설) 지경 (건의)	서쪽에대한건물 승용기설치에대항 일각쪽가능여부	홍승리씨	은평 하대리 승용기	8.9	9.9	공안회			9.6	처리	
8.06		주제 (건의) 도시 (건의)	신아건축공사 관련 동해로 광의역과화차 주차장준비에대항	임운찬	관외관외동 113-6	8.11					8.10	처리	
06		내무 (건의)	신아 숙박업소사동준비에대항	정진하	관외관외동 113-6	8.13					8.13	처리	
10		내무 (건의)	신아 숙박업소사동준비에대항	소용봉	관외관외동 113-6	8.16					8.13	회신	8.13 처리
11		사립학교 (건의)	대구내광공사 내무부 A공에대항	김선주	주내남방리 113-6	8.18					8.18	"	
11		내무 (건의)	경정 유구조 방법사대항	박노환	종남 남방동 113-6	8.19					8.18	처리	8.18 처리
12	서민 김/서	지경 (건의) 주제 (건의)	관외조성반대에대항 숙박시설신축에대항	송영철씨	관외관외동 113-6	"					8.19	처리(회신)	
	유	도시 (건의)	서쪽에대한건물 숙박업소사동준비에대항	한승라	의성동 113-6	"					8.20	처리	
5	유	지경 (건의)	관외조성반대에대항 개인택시승용차대항	한태진	남. 신산리 113-6	8.22					8.22	"	
		도시 (건의)	숙박업소사동준비에대항	임종도	관외관외동 113-6	"					8.20	처리	
	유	지경 (건의)	관외조성반대에대항	명지학	서. 관외관외동 113-6	"					8.22	처리	

민원사무처리부

수	②접수 또는처리 담당자	③ 종류	④건명	⑤인원인		⑥ 처리 기간	⑦ 유 근 첨	⑧협조또는조회		⑨ 조사 연월일	⑩처 분		
				성명	주소			월일	회신월일		월일	내 용	확 인
		내무 (경의)	대항사정리의 귀장현일무담종가제	종장소 삼천사 의정부	의정부3동 99-2	9.14					9.9	취리	
3	김영	산림 (정명)	충청남도기여대안정정	주만영(남광남영)	충청남도기여대안정정	9.22					9.22	취리	
15		건설 (정명)	광명도선서오철	광명도선서오철	광명도선서오철	9.26					9.22	"	
7		주택 (경의)	에대항사의 개방형종사판공제대용	남과우	충청남도기여대안정정	"					9.26	취리	
22		주택 (경의)	충청남도기여대안정정	광명수	충청남도기여대안정정	9.29					9.26	취리	
22		(가정) 정정	충청남도기여대안정정	김선주	충청남도기여대안정정	9.29					9.26	취리	
23		(주택) 정정	충청남도기여대안정정	김용찬	충청남도기여대안정정	9.30					9.29	취리	
6		(주택) 정정	충청남도기여대안정정	정필환	충청남도기여대안정정	9.30					9.30	취리	
	김영	(주택) 정정	충청남도기여대안정정	세이원 정지민	충청남도기여대안정정	10.4					10.4	취리	
	김영	상업 (정명)	충청남도기여대안정정	김영수	충청남도기여대안정정	10.4					10.4	"	
1	김영	건설 (정명)	충청남도기여대안정정	이재갑이영	충청남도기여대안정정	10.7					10.6	"	
2월말과장													
		지경 (이의)	충청남도기여대안정정	김봉운	충청남도기여대안정정	10.11					10.5	취리	
		건설 (정명)	충청남도기여대안정정	김정희	충청남도기여대안정정	"					10.5	취리	
		도시 (정명)	충청남도기여대안정정	김영라	충청남도기여대안정정	"					10.11	"	

-532-

①접 수		②접 수 또는 처리 담당자		③ 종류	④건 명	⑤민 원 인		⑥ 처리 기간	⑦ 경유 또는 접	⑧협조 또는 조회		⑨ 조 사 연월일	⑩처 분		화	
번호	월일	성명	주소			월일	회신월일			월일	내 용					
201	10.4			내무 (건의)	대학생 데모집회에 대한 건의	오영애	423-7 전남.광주북구 신안동	10.11					10.8	처리		
202				사법부 (건의)	하수도 관내내항건	노성호	순천 감성동 86	"					10.11	회신		
203				항상 (건의)	배출수 처리기 개선 건의	김희준	은평신안 24-1	"					10.7	회신		
204	10.1			건설 (건의)	도로방수벽에 대한 건의	이병기	서.동작구.상도동 13-1	10.14					10.14	회신		
205				내무 (건의)	주민등록 개편을 위한 건의	김영호	은평 용암 430	"					10.11	처리		
206	10.10			건설 (건의)	도로 확. 평상시에는 미의 시설	원대운	해성동 151	10.15					10.11	처리		
207	10.10			건설 (건의)	도시방수벽에 대한 건의	김윤남	성북. 동산 541	10.17		10.25	10.13	리서각 협의	10.7	처리		
208				주거 (건의)	주거환경 불쾌감에 대한 건의	김영일	마타리 468-1	"					10.17	회신		
209				주거 (건의)	주거환경 불쾌감에 대한 건의	이명섭	은평 용암 3/8	10.31					10.26	회신		
210	10.14			산업 (건의)	농림지 내 방수벽에 대한 건의	한승수	파주 광탄 신안 210-3	10.21					10.20	회신		
211				건설 (건의)	도시방수벽에 대한 건의	왕희국	의정부 124	"		10.18	리서각 협의		10.29	처리		
212				산업 (건의)	토양차폐수 처리에 대한 건의	고운석	은평구 신사 208-1	"					10.20	회신		
213	10.15			사.경 (건의)	가평항 수위에 대한 건의	김승호	파주 광탄 신안 214-3	10.22					10.18	회신		
214	10.17			건설 (건의)	배출수 처리기 개선에 대한 건의	박종민	강릉 신원 212-2	10.24					10.22	처리		
215				주거 (건의)	가평항 주수 수위 상승에 대한 건의	남만우	은평 하태 834-1	10.24					10.22	회신		
216				주거 (건의)	배출수 처리기 개선에 대한 건의	김복동	의정부 특계 145-1	10.25					10.25	회신		
217	10.20			건설 (건의)	배출수 처리기 개선에 대한 건의	이봉희	백현동 415	10.27					10.26	회신		